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심의·의결

의	안 번	ত	제2022-014-115호 (사건번호 :)	
안	건	명	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다	배한 시정조치에	관한 건
피	심	인	(사업자등록번호 :)	

대표자

의 결 연 월 일 2022. 9. 14.

주 문

1.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- 2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.
 - 가.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나.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이 유

I. 기초 사실

목포시청(이하 '피심인')은「지방자치법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,「개인 정보보호법」(이하 '보호법')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사업자 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
Ⅱ. 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조사()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.

1.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-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등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, 말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 - ※ 자동차등록사무소 과태료납부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가 타부서로 전보되었음에도 직원의 계정(김**, jskim07)을 '21.8.18까지 말소하지 않음

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가. 관련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 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(제2호)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」에서 개인정보처 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 (제5조제2항)

나. 위법성 판단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
- 자동차등록사무소 과태료납부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가 타 부서로 전보되었음에도 계정을 말소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,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(고시제5조제2항)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 부과

-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 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① (기준금액 산정)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>

(단위 : 만원)

		과태료 금액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 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버 제75天	600	1,200	2,400

- ② (과태료의 가중)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2021. 1. 27, 개인정보위, 이하 '과태료 부과기준') 제8조 [별표2] 가중기준에 따른 과태료 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- ③ (과태료의 감경)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[별표1] 감경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 행위를 개선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 50% 감경한다.

<과태료의 감경기준>

기준	감경 사유	감경비율
조사 협 · 자진 시등	1.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 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기준금액의 50%이내

[※]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의 감경기준)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%을 초과 할 수 없음

④ (최종 과태료)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%를 감경한 **300만원**을 부과한다.

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(안) >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	
위반조항	위반내용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(D) D=(A+B+C)	
법 §29	안전조치 의무 위반	600	-	△300	300	

□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2. 시정조치 권고

보호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.

- 가.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Ⅴ. 결론

피심인의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 제2 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제64조(시정조치 등)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 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 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2년 9월 14일

- 위원장 윤종인 (서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백대용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염흥열 (서명)
- 위 원 이희정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